

중대재해사태 _ 산재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입니다!



작업장 내 이동 중인 근로자를 후진하는 지게차가 충돌



재해 개요



콘크리트 하수관 몰드 조립작업 중 후진하는 지게차가 공장 내에 이동 중인
몰드 볼트 조립 작업자를 충돌하여 후륜 왼쪽 바퀴에 깔림

재해발생 원인



- > 후방카메라가 고장난 상태로 후방 시야 확보 미흡
- > 근로자의 접촉방지 조치 미 실시
- > 지게차 운전 부적합 근로자 배치
- > 작업계획서 미작성

재해예방 대책



- > 후방 카메라 및 모니터 또는 후방접근 경보기 설치
- > 근로자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접촉 우려 시 작업지휘자 또는
유도자 배치 후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운전자에게 신호
- > 건설업 조종면허 소지자 외 운전제한
- >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

관련 법령

산업법, 안전보건기준에 관한
규칙 및 KOSHA Guide 등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(작업지휘자의 지정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(신호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(접촉의 방지)
- 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(자격·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)
- 고용노동부 고시(제2015-47)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
- KOSHA Guide(M-185-2015)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
- KOSHA Guide(G-100-2013) 지게차의 운전자의 안전교육훈련에 관한 기술지침



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!

안전보건 VR 전용관
360vr.kosha.or.kr



지게차 작업시 이것만은 확인!



급출발·정지·선회 시 화물 낙하 주의



적재화물이 클 시 유도자 배치

지게차 준수사항 (건설기계관리법)

※ 대상 :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것을 말하며 전동식으로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것은 제외



1

건설기계의 등록

- 건설기계의 등록은 취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건설기계 등록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에게 신청

벌칙

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2

건설기계 검사

- 2년을 주기로 하는 정기검사,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거나 개조하는 경우 구조변경검사, 수시검사 명령을 받은 경우의 수시검사로 구분

벌칙

구조변경검사, 수시검사 : 100만원 이하의 벌금
정기검사 :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3

건설기계 조종면허

- 지게차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지게차 조종자격증을 소지하고 주소지 관할 시·도지사에게 조종면허를 발급
- 다만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는 경우 시·도지사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2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조종면허를 발급받아 조종할 수 있음

벌칙

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4

금지행위

- 건설기계의 소유자 및 점유자가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, 공터 등에 주차하여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 하는 행위

벌칙

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-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경우

벌칙

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